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980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 선 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1
III. 주요내용	2
IV. 검토의견	3
1.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3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에 대한 업무위탁 등	9
[참고자료]	1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9. 12.

3. 회 부 일 : 2024. 9. 13.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 안전감독관을 두고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직무 수행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등에게 출석요구·자료제출 등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사업장에서 어선원안전감독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법경찰권을 부여받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도 사법경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원재해 예방 업무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45조제4항 신설).
- 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검사·지도, 서류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 다.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
- 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제2항 신설).

IV. 검토의견

1.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 부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4항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 ③ (생략) <u><신설></u>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u>

- 어선어업은 다른 산업 대비 인명피해 및 산업재해발생률이 높아¹⁾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이 어선의 톤수에 따라 각각

1) 어선업의 재해율은 6.19%로 전체 산업 재해율 0.62% 대비 10.02배이며, 1만명 중 사망자 수 비율은 13.87‰로, 전체 산업 평균인 1.09‰의 14.23배임. 관련 세부내용은 [참고자료 1] 참조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두 법 모두에서 어선원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이 미비되어 있었음.

이에 「선원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을 「어선안전조업법」에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어선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하기 위해 2024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²⁾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전후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비교]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전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후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부)	<u>20톤 미만</u>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실제로는 육상사업장 위주 관리)	어선안전조업법 (해수부)	<u>모든 어선원</u> *모든 어선을 해수부가 관할 (타법과 동일하게 5명 미만 어선은 제외)
선원법 (해수부)	<u>20톤 이상</u>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실제로는 상선원 위주 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주요내용]

- (어선주 의무) 어선주에게 어선원 안전·보건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
- (위험성평가) 어선주가 안전·보건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하도록 위험성평가 의무화
- (안전·보건기준)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기준 등을 해수부장관이 고시
- (어선원안전감독관)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을 위해 해수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둔

□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2)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2] 참조

두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어선안전·보건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어선원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출석요구·자료제출 및 사업장 출입 검사 등의 권한을 행사하여 어선주 등 안전관리의무자의 의무 이행을 제고·확인하고 어선주의 안전보건 기준 준수, 어선원재해 발생원인 기록 보존·보고 등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대한 감독을 수행토록 하려는 것³⁾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과 유사한 취지에서 도입된 것임.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어선원안전감독관) ①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둔다. ②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자격·임면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어선원안전감독관의 권한) ①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어선원의 안전·보건 감독을 위하여 어선소유자, 어선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장부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어선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목적 및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검사의 실시를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다만, 개정법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지는 아니하여, 이 법에 위반 사건 발생 시 경찰수사에 의존해야 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수사에 직접적

3)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업무체계에 관하여는 [참고자료3] 참조

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어선원안전감독관에게 「사범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범경찰권을 부여하여 이른바 ‘특별사범경찰’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감독·단속 등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임무 수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특별사범경찰은 ① 전문적인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된 분야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고, ②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범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신속한 범죄 수사를 도모할 수 있는 등의 취지에서 1956년 도입됨.

□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해양수산부는 2025년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직제개정을 통해 총 9명의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신규 배치할 예정인바, 현재 입법예고된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안(대통령령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선원안전감독관은 전원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4) 사범경찰은 크게 검찰, 경찰, 해양경찰에 소속되어 범죄에 대해 일반적 수사권을 행사하는 ①일반사범경찰과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특정한 영역의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행사하는 ②특별사범경찰 두 종류로 구분됨.

있는 자를 임명⁵⁾하도록 하고 있어, 사법경찰관으로 활동할 경우 관련 사건 수사에 해당 분야의 지식을 활용해 신속한 수사와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현재 「수산업법」 및 「선원법」은 어업감독공무원과 선원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법경찰권 부여와 관련된 유사 입법례]

- ◆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수산업법 제70조(사법경찰권) 어업감독 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 선원법 제127조(사법경찰권) ① 선원근로감독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다만, 사법경찰권은 수사에 특별한 전문지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기존 사법경찰권으로는 수사 등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경우

5) 「어선원안전감독관규정안(대통령령안)」

제2조(자격 및 임명) ① 감독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어업관리단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6월 이상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2.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해양수산관서(해양수산부·지방해양수산청·해양수산사무소 및 어업관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한 사람
3.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 1년 이상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경력에 있는 사람
4. 해양수산관서에서 선원에 관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에 있는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5. 해양수산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렬 또는 해양수산직렬의 6급 또는 7급 공무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측면이 있는데, 감독관의 인원이 많지 않아(2025년 기준 9명) 현재 관련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해경과 역할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 시 역할분담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개정안과 관련하여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의 심사 추이를 살펴 함께 심사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의견으로,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어선원의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및 어선원 사망 등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 권한이 필요하고,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에 대한 업무위탁 등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해 검사 및 지도, 질문 또는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및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 ③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어선소유자,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④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의 임직원에게 대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51조제2항·제51조의2 신설, 제48조 개정).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법률 제19908호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45조의2(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u>

제48조(재정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

-----어선원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선소유자

2. 공단

3. 중앙회

4. 그 밖에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

②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사업, 지원의 내용·절차

정한다.	· 방법 등에----- -----.
제51조(<u>권한의 위임</u>) (생략)	제51조(<u>권한·업무의 위임·위탁</u>)
<신설>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 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중앙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 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나. 검토의견

- 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어선원 안전·보건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을 임명하는 한편, 동 법에 따른 어선안전·보건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사고 조사 지원,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검수, 현장 점검 지원 등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위탁할 계획임.
- 그런데 「어선안전조업법」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을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공공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공단직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선 등 사업장에 출입해 검사하거나 질문,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탁 업무를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개정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재정지출 등의 부담을 지게 되는 어선주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어선주의 의무이행을 촉진하고 수탁기관의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개정안은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의 업무 일부를 해양교통안전공단, 수협중앙회 등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② 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선 등에 출입해 검사하거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어선주, 공단, 중앙회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거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는 업무위탁의 근거,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의 내용 및 행사절차, 업무수행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명시하여 이 법에 따른 어선안전·보건 관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업무위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두고,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 출입 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산업안전보건법 및 개정안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개 정 안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 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5조의2(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 제2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u>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어선에 출입하여 어선원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45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어선안전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	제4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u>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41.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어선소유자 2. 공단 3. 중앙회 4. 그 밖에 어선의 사고 및 어선원재해 예방사업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 등 제51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중앙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1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 한편,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 안 제45조의2 및 제51조: 공단 등에 대한 업무위탁 및 공단 소속
지원의 검사 및 지도 등

□ 안 제51조제2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45조의2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선출입 조사·지도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단이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공단 직원이 어선원안전감독관 업무지원, 역학조사 실시 등 위탁받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산업안전보건법」의 유사 입법례⁶⁾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근해어선의 규모가 약 5,000여 척⁷⁾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연근해어선에 대해 어선원안전감독관이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현장점검,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기에는 인력부족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으로 하여금 점검 등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안 제51조제2항은 공단에 대한 업무위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개정안의 경우 제45조의2에서 공단 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해 어선에 출입해 검사·지도를 하거나 질문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위탁에 근거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하위법령 등에 위임하여 구체화하는 등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산업안전보건법」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7) 전체 연근해어선의 수는 약 65,000척으로 추산되며, 이 중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예정된 상시어선원 5인 이상인 연근해어선의 규모는 약 5,000여 척으로 추산됨.

- 참고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게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업무위탁을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을 총 41개 호에 걸쳐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그 밖에, 행정권한의 위탁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⁸⁾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므로,⁹⁾ 개정안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직원이 행하는 어선출입검사·지도,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와 국민의 권리·의무 사이의 관계성, 업무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범위 역시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조에 따르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8)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9)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운영·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4조에 따라 해양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홍보, 기술개발·보급, 자료수집·조사·연구 등의 업무와, 선박검사업무 등 법령에 따라 국가 등이 대행시키거나 위탁하는 업무 등 주로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교통시스템’, ‘선박의 안전성’ 및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 확보를 위한 연구 등을 수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바,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도와 선박에 출입하여 어선 안전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의 사업범위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안 제48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 안 제48조는 어선소유자, 공단, 중앙회 등 어선원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어선의 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한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업수행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근거조항으로 삼으려는 것이며,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 다만, 현 일부개정법률 조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보조금 교부나 자금 융자를 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기술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므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¹⁰⁾.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현재 기존 법에 따라 지자체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개정안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에 지방자치단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의 보완이 필요해 보임.

(3) 안 제51조의2: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

- 안 제51조의2는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적인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자에 대해 형법상 수뢰죄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입법 유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2

10)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1

어선원, 어선재해 관련 통계

구분	세부내용									
톤급별 어선 및 어선원	(단위: 척, 명, 명)									
		5톤 미만	10톤 미만	20톤 미만	20톤 이상	합계				
	등록어선 (‘22.12.31. 기준)	51,272 (79.6%)	9,264 (14.4%)	1,188 (1.8%)	2,661 (4.1%)	64,385 (100%)				
	연근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및 어획물 운반선 포함)	46,286 (78.9%)	8,902 (15.1%)	1,121 (1.9%)	2,282 (3.8%)	58,591 (100%)				
	어선원 (‘22.12.31. 기준)	59,863 (56.9%)	21,878 (20.8%)	2,673 (2.5%)	20,865 (19.8%)	105,279 (100%)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산출할 경우 대상 어선은 약 5천여척										
재해율 비교 (‘22년 기준)	○ 최근 3년(‘20~’22)간 산업재해 현황 평균									
		근로자수 (명)	재해자수 (명)	재해율 (%)	사망·실종자수 (명)	사망만인율 (‰)				
	조선업(A)	19,508,898	120,480	0.62	2,122	1.09				
	어선업(B)	74,320	4,599	6.19	102	13.87				
	비교(B/A)	0.38%	3.82%	10.02배	5.42%	14.23배				
* 다른 산업 중 제조업은 0.77%, 건설업은 1.23%										
어선원재해 현황 (최근 5년간, 중해심)	< 연도별 어선원 재해 현황 >									
	(단위: 명,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450	451	416	288	414				
	사망	79	99	89	83	78				
	부상	371	352	327	205	335				
	< 사고유형별 어선원재해 현황(‘23년) >									
	(단위: 명, 건)									
	구분	합계	총돌	전복	침몰	화재 폭발	안전 재해*	접촉	좌초	그외
	합계	414	187	30	2	18	104	8	57	8
	사망	78	10	14	2	0	48	1	0	3
	부상	335	177	16	0	18	55	7	57	5
* 양망기 사고, 목격자 없는 사망·실종, 선내·해상추락, 신체 가격 등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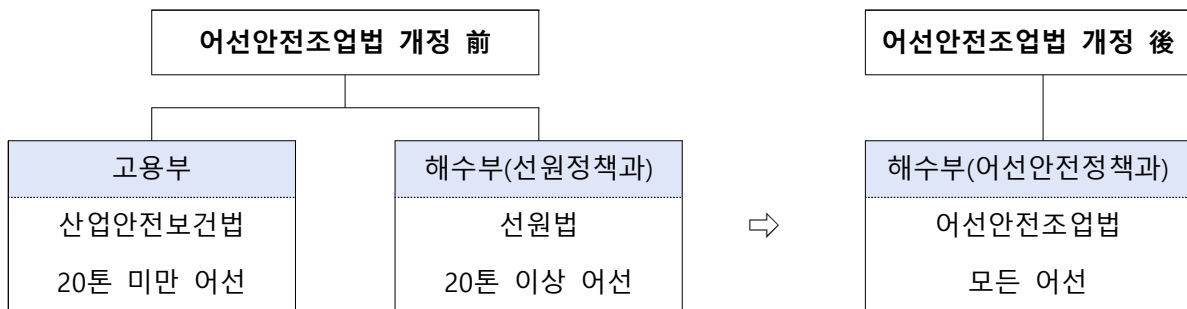
어선안전조업법 개정 주요내용('24.1.2 일부개정)

□ 추진배경

- (배경) 관리체계 이원화, 안전보건기준 미비 등으로 어선원은 높은 재해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안전·보건 관리 사각지대로 유지

* 사망만인율(13.87‰)은 전산업(1.09) 대비 **14.23배** / 산업재해율(6.19%)은 전산업(0.62) 대비 **10.02배**

- 노사정 합의('21.11월, 경사노위)에 따라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를 해수부에 서 전담하도록 하는 「어선안전조업법」 개정('24.1.2. '25.1.3.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어선 사업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선원의 안전·보건 및 재해예방 관리체계”(제4장의2, 총 22개 조항) 신설
- (제명 변경) “어선안전조업법”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 (어선원안전보건기준) 어선원의 작업 및 위생기준, 어선소유자의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기준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 (위험성평가) 어선소유자에게 선내 안전·보건 관련 위험·유해 요인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어선원안전감독관) 어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 및 어선원 재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선원안전감독관을 둠
- (기타) 선내 안전보건표지 설치·부착, 어선원 재해예방 통합시스템 구축 등

참고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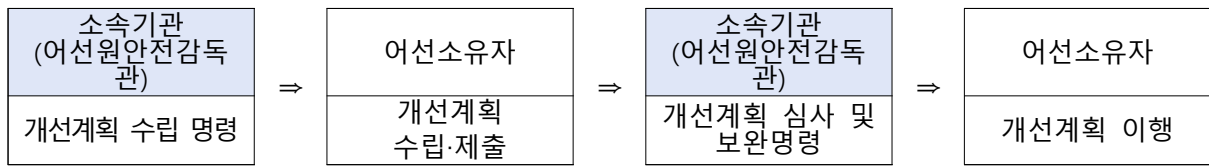
어선원안전감독관 업무체계

□ 감독관 현장 지도·점검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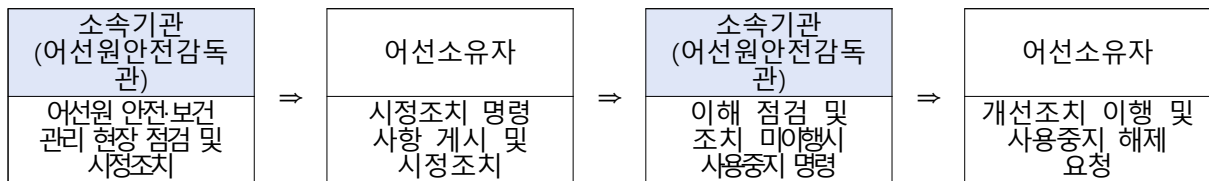
어선안전조업법 (조문)	법령 주요내용	감독관 중점 점검사항
어선관리감독자 (제27조)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선장 등)에게 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함	❶ 어선관리감독자 지정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8조)	어선소유자는 어선내 작업과 관련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개선 조치를 해야함	❷ 위험성평가 및 개선 조치
어선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제29조)	어선소유자는 어선 내 위험시설,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경고, 지시, 안내 사항 등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붙여야함	❸ 어선안전보건표지 부착
안전조치(제31조)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어선원안전보건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❹ 어선원안전보건기준 준수
보건조치(제32조)		
어선소유자 등의 긴급조치(제37조)	어선소유자 또는 어선관리감독자는 어선원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해야함	❺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어선소유자의 조치 (제40조)	어선소유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작업 중지, 어선원 대피 조치를 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해야함	❻ 어선원중대재해 발생시 작업 중지 및 대피 조치
어선원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제43조)	어선소유자는 어선원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되며,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등을 기록보존하고 해양수산부에 보고하여야 함	❼ 어선원재해 발생 원인 기록 보존 및 보고

□ 법률에 따른 어선원안전감독관 업무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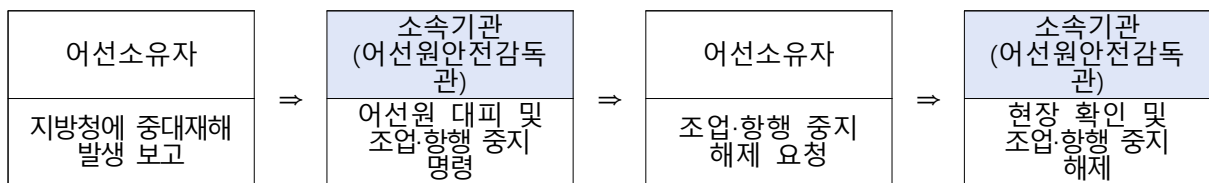
○ 어선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34조)



○ 어선 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시정조치(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39조)



○ 어선원중대재해 발생 시 조업·항행 중지 조치(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40조)



○ 어선원재해 등 원인조사(개정 「어선안전조업법」 제42조~제45조)

